

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·대응지침 자료 전달

청송보현요양원은 입소어르신 모심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하는 시설입니다. 이에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전 직원 및 전 입소자 대상으로 분기 1회 필수교육과 시설 내 노인학대 신고절차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
이 자료는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을 목적으로 수급자(보호자)분들에게 제공되어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행해질 경우 신속히 신고 및 상담을 통해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드리고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.

보호자분께서 믿고 맡겨 주신만큼 직원들 교육을 통해 항상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하고,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교육하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.

노인학대 신고·상담	신고전화	1577-1389 (노인보호전문기관)
		(국번없이)129 (보건복지부콜센터)
	상담전화	054)872-8661 (청송보현요양원)
※ 신고 또는 상담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 받습니다 ※		

*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 *

시설장, 종사자, 동료 생활노인, 가족,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'노인 권리선언'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,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.

- 1)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: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부여
- 2)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: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,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
- 3)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: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함
- 4)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: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,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됨
- 5)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6)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7)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: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.
- 8)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- 9)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10)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11)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* 노인학대 유형 및 예측징후 *

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•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• 묶임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•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	 정서적 학대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•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• 흥분,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•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	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•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• 겹을 때 혹은 압을 때의 어려움 •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
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•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•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•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	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 • 대소변 냄새, 땀, 열증, 욕창 등이 방치됨 • 의복 및 이발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•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(자기방임)	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•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•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
*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*

1) 노인 개인

- ①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
- ②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
- ③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
- ④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

2) 가족

- ①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
- ②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,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

3) 사회

- ①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뤄져야함
- ②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

4) 노인요양시설

-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·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핌
- ②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
-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됨
-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, 항상 존대어 사용
- 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